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31호 2014. 8. 6.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4-70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4-597호 2014년도 정선군 경관주택 지원계획 공고안 3
- 정선군 공고 제2014-627호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정선군 공고 제2014-632호 정선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4-70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정선군고시 제2005-17호(2005.3.19.)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m ²)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22번지 일원	688,338

2.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변경 없음”

주 소	성 명(법인·단체)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번지	(주) 함백종합레저타운 대표이사 양화석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

기 정	변 경
2004년 ~ 2013년	2004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지역경제과(☎033-560-24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4-597호

2014년도 정선군 경관주택 지원계획 공고안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14년도 경관주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 관내 도시지역외(녹지지역 제외)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단독주택
(2013.11.01. ~ 2014.10.31.기간내 사용승인) 중 정선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 가. 주거전용면적 66㎡ 이상이면서 150㎡ 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 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용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 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 복구주택
 - 마. 경관주택 인증신청일 현재 정선군 거주자(주민등록상)
 - ※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위법건축물과 동일인(가구)에 대한 보조금 이중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함.
2. 지원금액 : 동당 5,000천원 범위내 보조
3. 지원신청
 - 가. 신청시기 : 2014. 11. 04일 까지
 - 나.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신청기관 비치)
 - ※ 결과발표 : 2014. 12. 20일 경(공문 및 전언통보 예정)
4. 문의전화 : 군청 도시건축과(☎033-560-2471~2474) 및 해당 읍면사무소

정선군 공고 제2014-627호

「정선군자체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법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2.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0. 3. 22.) 취지를 반영하고, ‘98. 5. 11. 제정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토록 개선·보완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의 내실과 성과를 거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사대상기관으로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군이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기관>을 추가(안 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분류하고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선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의 근거를 신설(안 제3조)
-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안 제16조)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정선군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근거를 신설(안 제18조)
- 새로 도입된 재심의신청 제도의 규정(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560-2228
- 팩 스 : 033-560-2592
- 메 일 : k3735872@korea.kr

붙임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선군자체감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정선군수가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3. 군이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④ 일상감사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4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5조(중복감사의 지양)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장 일반기준

제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선발한다.

-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정선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군수는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감사담당자 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신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하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감사 개시일 15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실시

제12조(사전준비)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예비조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청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문서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의 봉인
3. 관계 공무원이나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및 답변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경위서, 증명서 등 감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14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따른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련자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 처리

제15조(감사결과와 보고)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제1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감사결과와 처분지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훈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정선군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현지시정) ①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지시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 군수는 감사결과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 관계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발생 보고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훼손 보고

제6장 감사결과와 사후관리

제21조(재심의신청 등)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신청을 군수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결과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결과 확인)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행정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14조제1항 관련)

제 목 :

[현 황]

○

[확인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	---	----	-----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	---	----	-----

(뒷장)

[확인자 의견]

[관련공무원 조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책임한계	현근무처	비고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실무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제14조제2항 관련)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명 :

위의 사람은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제14조제3항 관련)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질 문 사 항 20 년 월 일 ○○○○ 귀하 정선군 감사관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 변 사 항 20 년 월 일 정선군 감사관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16조제1항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수령자	

현지조치 요구서
(제17조제2항 관련)

20 년도 (기관명)에 대한 (감사사항명)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를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

감사반장 : 직 성명 (인)

소 관	시행년도	처분종류	금 액	비 고

【제 목】

【현 황】

【내 용】

【조치할 사항】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명(부서) :
2. 실시구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출사항 :
7. 기 타 :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사 동향보고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발생 보고

1. 행 위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

2. 범행사실

○ 사건명 :

○ 내용 :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4.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망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21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소관 부서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정선군 자체감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귀하				

관련법령 발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4-632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법

2. 개정이유

- 봉안당 이용 중단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해지시 합리적으로 환불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규정으로 봉안당 이용관련 피해분쟁 및 민원 제기가 빈번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환불 등 개정(안 제9조 4항, 안 제21조 2항)
-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정(안 제9조5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 화 : 033-560-2975
- 팩 스 : 033-560-2588
- 메 일 : han93455@korea.kr

붙임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제목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군에 가진 경우를 관내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로 구분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그 주소

제5조제2항제2호 중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산모의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소재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를 “분묘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으로, “득한 자는” 을 “받은 사람은” 으로, “사용하여야” 를 “사용해야”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을 “장사시설(분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자격은 사망일 기준” 으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를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로, “사항에 의하여” 를 “바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30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사람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신청일)” 을 “신청일을 말한다)” 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를 “주소를 가진 사람” 으로, “안치된 자” 를 “안치된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를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를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로, “때에” 를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인에게” 를 “다른 사람에게” 로, “매매하였을 때” 를 “매매한 경우” 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위반한 때” 를 “위반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날로부터” 를 “날부터” 로, “아니하였을 때” 를 “아니한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때” 를 “아니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 를 “거짓” 으로, “받았을 때” 를 “받은 경우” 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설치하였을 때” 를 “설치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인정될 때” 를 “인정된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필요한 때” 를 “필요한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밖에” 를 “밖에 군수가” 로, “필요한 때” 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법 제20조에 준하여” 를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에 의한” 을 “별표 3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환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시설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경우”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위탁의 취소 등)”을 “(위탁의 철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수탁자가”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를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관련법령”으로, “위반 하였을”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판단되는”을 “판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하였을”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을 “부적당하다고 인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4와”를

“별표 6과” 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항과” 를 “제1항 및” 으로, “1월전에 제9조에 의한” 을 “1개월 전에 제9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반환하여야” 를 “되돌려 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불하며” 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 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를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받은 자” 를 “받은 사람” 으로, “제7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를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 을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8조에 따른” 으로, “취소일로부터 1월” 을 “취소일부터 1개월” 로, “통지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표5와” 를 “별표 7과” 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월전” 을 “1개월 전” 으로,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으로, “매장하여야” 를 “매장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제21조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처리한 장사시설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인 장사시설 사무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2조 관련)

법 률 명	대 상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별표 2]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공설묘지	정선 하늘공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27번지	
공설 화장시설	정선 하늘터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연장 사용료
			정선군민	기타 지역주민	
공설묘지 (정선하늘공원)	매장분묘	단장(6.3㎡)	923,000	-	300,000
		합장(8.1㎡)	1,200,000	-	390,000
	봉안묘(12기 : 10㎡)		1,476,000	-	480,000
공설봉안시설 (하늘원)	유연유골 (15년)	개인단	300,000	1,000,000	300,000
		부부단	500,000	1,500,000	500,000
	무연유골(10년)		150,000	300,000	-
공설화장시설 (정선하늘터)	대인(만15세이상)1구당		100,000	700,000	
	소인(만15세미만)1구당		80,000	500,000	
	죽은태아 1구당		80,000	400,000	
	개장유골 1구당		50,000	300,000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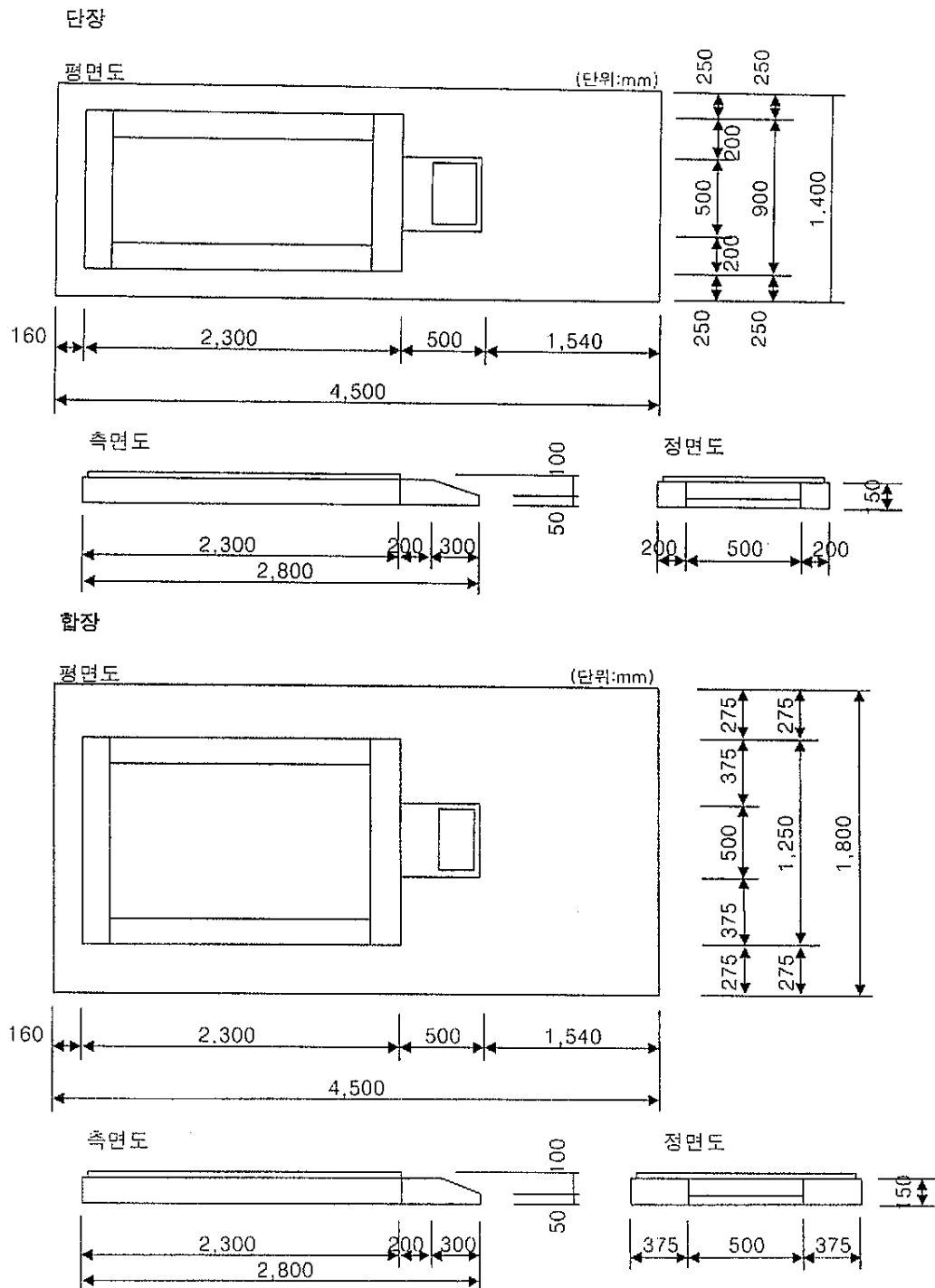
장사시설의 사용료 환불기준
(제9조제5항, 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사용기간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비고
	정선군민			정선군민		기타지역주민		
	매장분묘		봉안묘 (12기 : 10㎡)	유연유골(15년)				
	단장 (6.3㎡)	합장 (8.1㎡)		개인단	부부단	개인단	부부단	
	923	1,200	1,476	300	500	1,000	1,500	기납부액
1일 이상 5년 미만	550	720	880	180	300	600	900	
5년 이상 10년 미만	270	360	440	90	150	300	450	
10년 이상	미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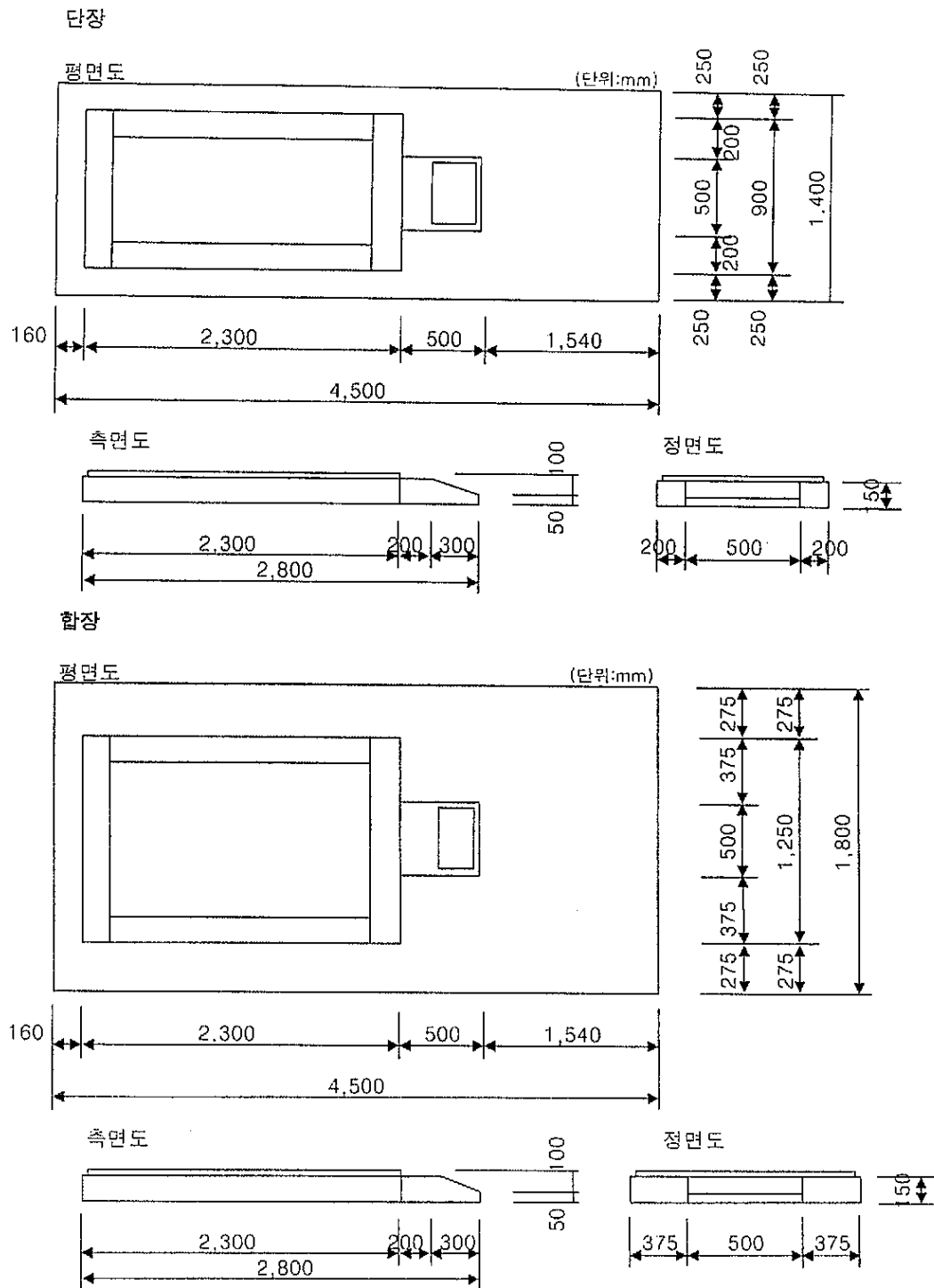
[별표 5]

분묘의 규격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6]

봉안묘 시설 규격
(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7]

봉안당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시설명	시설기준
봉안안치단	봉안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한다.
유 골 함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	① 봉안안치단의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② 유골함의 위패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기록 부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	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
1. “장사시설”이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2.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3.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과 같다.		
4. “연고자”란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의한다.			
5.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시설을 말
한다.

7.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
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묘형
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8.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른 희생·공헌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
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하여 해당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으
로 별표 6과 같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
다)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장사시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이 조례

제3조(수급계획) ① -----
-----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 수립·시행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명칭 및 위치) -----
----- 별표 2와 ---.

제5조(사용허가 등) ① -----
----- 사람(이하 “사
용자” 라 한다)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시 관내, 관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3.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4. 무연고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사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정선군일 경우 관내로 하고, 그 외는 관외로 한다.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군에 가진 경우를 관내로, 그 외의 경우를 관외로 구분한다.

1.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그 주소

2. -----
-- 산모의 주소

3. -----
----- 소재지

4. -----
----- 분묘의 소재지

제6조(사용장소의 지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득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따
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
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
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
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2. 봉안묘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자 또는 군에 30년 이
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망일(개장
유골은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자의 가족과 공설묘지 내 이
미 매장되어 안치된 자의 가족
유골 및 납골을 안치하여 사용

----- 받은 사람은

-- 사용해야-- ---.

제7조(사용자격) ① 장사시설(분
묘 및 봉안묘를 말한다)의 사용
자격은 사망일 기준 -- 사람으
로 -. ---- 군에 주소를 가진 사
람이 아닌 경우-----

----- 바에 따라-----
-----.

1.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30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
소를 가진 사람

② 제1항-----

신청일을 말한다) -----
---- 주소를 가진 사람-----

안치된 사람-----
-----.

할 수 있다.

③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봉안당에 안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선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정선 하늘터 시설 사용은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

③ -----
----- 제1항-----

-----.

④ -----

----- 주소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 경우에는 -----
-----.

1. -----
다른 사람에게 ----- 매매한 경우
2. -----
- 위반한 경우
3. ----- 날부터-----
----- 아니한 경우
4. -----

료를 납부하지 <u>아니한 때</u>	----- <u>아니한 경우</u>
5.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u>받았을 때</u>	5. <u>거짓</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u>받은 경우</u>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u>설치하였을 때</u>	6. ----- ----- <u>설치한 경우</u>
7. 장사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u>인정될 때</u>	7. ----- ----- <u>인정된 경우</u>
8. 장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u>필요한 때</u>	8. ----- ----- <u>필요한 경우</u>
9. 그 <u>밖에</u>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u>필요한 때</u>	9. -- <u>밖에</u> 군수가 ----- ----- <u>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u>때에는 법 제20조에 준하여</u> 처리할 수 있다.	③ ----- ----- ----- <u>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u>별표 2에 의한</u>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 ----- <u>별표 3의</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u>	④ <u>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u>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또는 정산할 수 있다.

⑤ 사용료 납입 후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환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

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공설봉안시설의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환불금액은 5년 단위로 산출하되, 그 기간별 환불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항에 따른-----

----- 제출해야-----
-----.

⑤ ----- 사람은 -----

칙으로 한다.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3조(개장제한) 사용허가를 받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거나 안치하여 이미 사용 중인 자는 공설묘지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분묘에서 봉안묘나 봉안당, 봉안당에서 봉안묘, 봉안묘에서 봉안당으로의 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제11조(주소변경 등 신고) 사용자

----- 경우-----

----- 신고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장제한) -----

----- 사람은 -----

-. -----

---.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

자”라 한다)과 -----

정한다. 이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철회 등) ① 군수

는 수탁자가 -----

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 이 조례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장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의 취소 결정일 1월전에 수탁자에게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위탁업무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 분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

-----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

1. 관련법령----- 위반한-----

2. 위탁운영----- 판단된-----

3. ----- 발생한-----

4. 그 밖에 -----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결정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 위탁 운영----- 그 밖의 ----- 응해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분묘 및 봉안묘의 구조)

① -----

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 봉안묘의 시설물은 석조로 하며 규격은 별표4와 같다.

③ (생 략)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분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의하여 개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하여 이미 납부된 전액을 환불하며, 사용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합장)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최초 매장자는 제7조

--- 별표 5와 --.

② -----

----- 별표 6과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
----- 1개월 전
에 제9조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
----- 사람이 -----
----- 그 밖의 -----

----- 되돌려 받아야 .

② -----
----- 되돌려 주
어야 하며-- 별표 4의 장사시설
의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되
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합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받은
사람 ----- 제7조제1항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매장된 자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장할 수 있다.

제23조(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분묘 및 봉안묘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기준) 봉안당에는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을 두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5조(사용기간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에 따른다.

④ ----- 따라 매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제7조제1항-----
-----.

제23조(개장명령) ① ----- 제8조에 따른-----

-- 취소일로부터 1개월 -----
----- 알려야---- --.

② ----- 제1항에 따른-----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

③ ----- 따른 -----

--.

제24조(시설기준) -----

----- 별표 7과 --.

제25조(사용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개월 전-

1월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된 무연유골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내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 사용장소의 반환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해야-- ---.

④ ----- 제21

조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